

# 고용된 총잡이를 넘어서

-성서적 법조윤리를 위하여-

한 철(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I. 머리말

법원은 만원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렬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웃 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공간을 메워주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물론 소송은 사회분쟁의 해결을 야만적인 폭력에 맡기는 것에 대한 대안이며, 법치사회의 구조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증가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양보와 타협이라고 하는 상식 수준에서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의 실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울이 교회가 세속법정에 의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sup>1)</sup> 그리스도인 개인만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까지도 문제를 세속법원으로 가지고 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정에 가는 경우 소송당사자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소송과정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진력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우리 사회에 부정적 정서가 만연해 있다.<sup>2)</sup> 거기에는 소송지연, 비용과다, 절차남용 등을 가져오는 소위 고용된 총잡이(hired gun)<sup>3)</sup> 논리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법률가의 이미지는 고용된 총잡이의 이미지인 미국의 서부를 배경으로 한다. 고용된 총잡이인 법률가는 자신을 가치중립적인 전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역할을 단순하게 의뢰인의 신호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이러한 법률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의뢰인만 아는 사람이다. 법률가의 유일하고 첫째가 되는 의무는 타인에게 어떤 비용과 해를 끼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뢰인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변호사가 돈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공공의 불신과 비판을 가져온다.<sup>4)</sup>

고용된 총잡이 논리는 오늘날 람보식 법률가(Rambo lawyer)<sup>5)</sup>의 형태로 변형되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일련의 람보 영화에서 실버스타 스텔론이 연기한 람보

1) 고전 6:1-7.

2) 가재환, “법조윤리교육의 필요성과 현황-사법연수원의 법조윤리교육(1981~2000)”, 『법철학연구』 제4권 제2호(2001); 심현섭, “법조윤리의 정신과 이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2003).

3) 고용된 총잡이로서의 법률가 이미지의 역사를 설명한 자료로는 Michael I. Krauss, The Lawyer as Limo: A Brief History of the Hired Gun, 8 U. Chi. L. Sch. Roundtable 325 (2001).

4) L. Timothy Perrin, Lawyer as Peacemaker: A Christian Response to Rambo Litigation, 4, 32 Pepp. L. Rev. 519, 519(2005). Joseph Allegretti, The Lawyer's Calling-Christian Faith and Legal Practice, 심동섭·전재중 역, 『법조인의 소명』, IVP (1999), 141 이하.

5) Allen K. Harris, The Professionalism Crisis - the “Z” Words and Other Rambo Tactics: The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Solution, 53 S.C. L. Rev. 549, 569 (2001)

캐릭터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고용된 총잡이의 이미지가 의뢰인에 대한 일종의 무조건적인 충성을 암시한다면, 람보식의 법률가의 이미지는 당사자주의 시스템과 그 가치에 대하여 일종의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는 자를 묘사한다. 람보식의 법률가의 태도에는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승리를 얻어내고야 만다고 하는 단순한 생각, 변호사로서의 그의 역할에 있어서 도덕적 책임의 거부,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모든 전술을 정당화한다고 하는 신념<sup>6)</sup> 등의 특징이 있다. 그는 소송을 일종의 전투로 보며, 자신을 고풍스러운 전사라고 하는 로맨틱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sup>7)</sup> 이러한 견해에서는 법률가는 정의 또는 진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법률가는 오로지 의뢰인에게만 배타적으로 충성하는 것이다. 법률가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고용된 총잡이 또는 람보식 법률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성서에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본문이 매우 풍부하다. 특히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서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경탄을 받아왔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내용이 대부분 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되어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원칙을 그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산상수훈의 법적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sup>8)</sup> 그리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영혼을 가진 법률가 활동의 기본 모델로 전제한다. 이 모델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티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복수의 도구로 전략하는 것을 거부하며, 화해자와 치유자가 되기를 강하게 희망한다. 이러한 모델을 고용된 비둘기(hired doves)로서의 법률가<sup>9)</sup>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법률가 사회에서 지배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된 총잡이(hired gun) 모티프와는 날카롭게 대립된다고 할 것이다.<sup>10)</sup> 산상수훈이 보여주는 실정법의 의미와 목적은 사랑, 이타주의, 자선 등이기 때문이다.<sup>11)</sup> 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구속된

6) Jean M. Cary, Rambo Depositions: Controlling an Ethical Cancer in Civil Litigation, 25 Hofstra L. Rev. 561, 579 (1996).

7) Perrin, 521~2.

8) Craig A. Stern, Crime, Moral Luck, and the Sermon on the Mount, 48 Cath. U. L. Rev. 801 (1999).

9)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그리고 성령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성서적인 메타퍼는 “hired plowshares”일 것이다. 미가서 4:3은 “주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plowshares)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 라고 한다.

10) 주로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고용된 총잡이’(hired gun) 모델의 문제점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harity Scott, Fall 2007 Symposium on Advanced Issues in Dispute Resolution Doctors and Lawyers: Pathways to Collaboration Doctors as Advocates, Lawyers as Healers, 29 Hs s He J. Pub. L. & Pol’y 331 (Spr Hea2008 Special Feature); L. Timothy Perrin, Be a Religious Caas He? II. Practi9 Hs Impli9 tes, r Law as A Religious Caas He: Lawyer as Peacemaker: A Christ an Resps, e to rs as & Pol’y 3314. 32 Pepp.008 Specialure2005); R bert F. Blomquist, Law and Spirituaaity: Some First Thought rnalersmerg HeaRell’y 33171 UMKC008 Special83 (Spr Hea2003); MDoc C. Szto31 Lawyers as Hired Doves: Lesss, f sm the Sermon on the Mount, 31 Cumb.008 Spec 27 e2000-2001); Joseph Allegretti, Have Brief case Will Travel: An Essay on the Lawyer as Hired Gun, 24 Creighton L. Rev. 747 (1991); Ted Schneyer, Some Sympathy f orthe Hired Gun, 41 J. Legal Educ. 11 (1991).

11) Anthony Cook, The Death of God in American Pragmatism and Realism: Resurrecting the Value of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드물고,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자 및 정부 관리에 대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바의 두 배를 주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관대하게 베풀게 된다. 그와 같은 역설적인 정의가 법률가들을 자유케 하고 고용된 비둘기가 되게 해줄 것이다.

## II. 법조윤리에 관한 성서적 근거

### 1. 서

산상수훈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서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성서를 직접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 가르침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산상수훈은 독자들에게 대하여 세속의 지혜와 삶의 태도, 성공 패턴 등과 관련하여 세속원리와 반대되는 아름다운 진리와 원칙을 제공한다. 역설적으로 세속적 원리와는 반대되는 윤리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무시되는 성서의 가르침이기도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읽고 그 아름다움과 힘, 순수성 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의 원리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과연 이 아름다운 진리가 현실에서 무시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이하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마태복음의 본문을 중심으로 산상수훈의 개요를 살펴본다.

예수께서는 산에서 그의 사도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강론하셨다(5:1).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초기에 설교되었다. 이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한 일련의 축복들인 여덟 가지 지복(至福)과 함께 시작된다. 산상수훈의 다음 부분은 모세의 법에 대한 해석이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모세의 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고 주장하신다(5:17). 이 부분에는 놀라운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는 살인행위의 금지에는 증오의 금지가 포함되는 것이며(5:21~22), 간음행위의 금지에는 섹욕 자체의 금지가 포함된 것(5:27~28)<sup>13)</sup>이라고 가르치셨다. 이 글에서는 산상수훈의 관련 구절들을 검토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눈에는 눈으로’ 라고 하는 유대의 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탈리오의 법칙(*lex talionis*)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무저항을 권하고, 오른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며(5:39), 오리를 가자고 하는 이에게 십리를 동행해 줄 것(5:41)을 권한다. 이와 같은 지복, 탈리오의 법칙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5:44)도 포함되고,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6:9~13), 돈

---

Love in Contemporary Jurisprudence, 82 Geo. L.J. 1431 (1994).

12) Carl G. Vaught, *The Sermon on the Mount: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ix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1986).

13)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 5:27-28.

을 사랑하지 말며(6:19~24) 근심하지 말며(6:25) 남을 판단하지 말며(7:1~6) 타인에게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고 하는 가르침(7:12)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은 법의 의미에 대한 요약이다. 산상수훈은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비유(7:24~27)로 마친다.

## 2. 분쟁해결원리에 관한 논의

산상수훈과 법률가들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먼저 해석학적 역사의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신학자, 철학자, 윤리학자 등은 수 세기에 걸쳐서 그 근원적인 원칙과 씨름을 하고 있다.<sup>14)</sup> 사실상 산상수훈은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성서의 본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법학과 신학의 상호작용은 날카롭다. 산상수훈은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산상수훈의 문자적 적용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초기의 교부들은 대체적으로 산상수훈이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sup>16)</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산상수훈의 일부는 엘리트나 최고 수준의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신자들은 가난, 순결, 순종 등을 맹세했다. 아퀴나스는 산상수훈이 복음적인 가르침과 완전한 삶에 대한 권고의 양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가르침이 구속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권고는 완전한 삶과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모방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산상수훈을 엄격히 지키기 위한 수도원생활 및 금욕주의가 등장했으며, 모든 신자에 대하여 산상수훈의 준수가 요구되지는 않는 것이며, 더군다나 일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sup>17)</sup>

종교개혁 시기에는 산상수훈의 적용의 문제는 교회와 국가를 둘러싼 논쟁에 의해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16세기 유럽 대륙에는 다양한 그룹의 재세례파(Anabaptists)가 있었다. 그들은 그들 자녀의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믿는 자의 세례를 다시 실시하였다. 토마스 뮌쩌(Thomas M nzer), 후터라이트(Hutterites), 메노나이트(Mennonites) 등이 포함된 이 그룹은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였으며, 국가와 국가의 법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재세례파는 산상수훈에 대한 아퀴나스의 제한적인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선서, 소송의 제기, 전쟁의 금지 등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들은 신자들이 국가 및 정치 활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교회와 국가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세례에 대한 견

14) 산상수훈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의 역사적인 전개에 관하여는 Warren S. Kissinger, *The Sermon on the Mount: A History of Interpretation and Bibliography* (Scarecrow Press 1975).

15) Clarence Bauman, *The Sermon on the Mount: The Modern Quest for Its Meaning* 3 (Mercer Univ. Press 1985).

16) Kissinger, 7-13.

17) Id., 18.

해,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 맹세와 폭력에 대한 거부 등은 그들을 조롱, 박해 및 순교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세례파의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교회와 국가에 대한 미국적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된다.<sup>18)</sup>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재세례파와는 대조적으로 ‘두개의 왕국’이라는 접근 방식을 취하여,<sup>19)</sup> 국가와 교회는 동일한 기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목표를 위해 봉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산상수훈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하는 두 개의 왕국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속적 왕국에 대해서는 세속적인 권위를 통하여 통치하시고, 영적 왕국에 대해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루터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과 예컨대 변호사, 판사, 군인 등과 같이 세속적이고 공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구별했다.<sup>20)</sup> 따라서 루터는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그리스도인 개개인에 대해서는 비저항을 가르쳤다. 결과적으로 루터는 신자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자신과 직업적인 자신을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산상수훈을 완전한 자들을 위한 권면이라고 가르친 자들을 궤변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간이 완전하든지 불완전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21)</sup>

존 칼빈(John Calvin)은 초기 교부철학자들과 가까운 태도를 취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소송을 허용하기는 하되 중요가 없이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가르쳤다.<sup>22)</sup>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의 복수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23)</sup> 그는 로마서 13장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는 가르침과 균형 있는 해석을 하려고 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모든 신자에게 동기를 시험해 볼 것을 요구했다.<sup>24)</sup> 칼빈과 같이 루터도 소의 제기가 정의로움에 대한 전적인 사랑으로부터

18) Id., 30-31.

19) 김대인, “마틴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고찰-두 왕국론을 중심으로”, 『기독교대학교육 및 기독교학문의 토대』, 제4회 국제기독교대학교육학술대회 프로시딩, 297(2009) 이하.

20)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참전하는 경우, 판사의 자리에 앉아 그 이웃을 처벌하는 경우, 또는 소송절차를 밟는 경우, 그는 이러한 직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나 판사 또는 변호사로서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유지해야 한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이웃이 불행할 당해야 한다면 이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모든 종류의 일들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리고 동시에 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하고 수행하는 세속적인 인간으로 산다.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대한기독교서회, 2004), 185~6.

21) 위의 책, 198.

2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옮김, 『기독교강요(하)』,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606.

23) 위의 책, 586.

24) 피고가 지정된 날짜에 재판정에 출석하여 할 수 있는 만큼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을 변호하되 원한의 마음이 없이 다만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만 임하고, 또 원고도 자기의 신상이나 재산상으로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법관의 처분에 맡기고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공정하고도 선한 것을 도모한다면, 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에 의한 소송의 제기를 허용했다.<sup>25)</sup>

현대에 들어와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산상수훈의 법적 관련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요하네스 바이스(Johannes Weiss)는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이 세상에서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다만 미래에 인식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sup>26)</sup>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산상수훈이 재림을 기다리는 중간기적 회개윤리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왕국은 도덕을 초월한다<sup>27)</sup>고 주장했다. 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 Niebuhr)는 하나님의 나라가 불가능한 것들이 참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항상 가까이 있으며, 역사의 주어진 순간에 새로운 현실성으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항상 압박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간의 수직적인 차원만을 규율하는 불가능한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의 윤리적 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sup>28)</sup>

다른 한편으로는 산상수훈의 적용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주장된다. 레오 톨스토이(Leo Tolstoy)는 러시아 소작농 계급에게 매혹되어서 산상수훈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견해를 취하여 모든 정부와 법을 거부하는 무정부주의적인 사상을 개진했다.<sup>29)</sup> 그는 군대와 국가는 산상수훈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1930년대 초에 독일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으면서 산상수훈의 기독교론을 행동신학의 기초로 보았다.<sup>30)</sup> 또 간디(Gandhi)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등도 산상수훈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사회개혁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III. 분쟁해결의 원리

마태복음 5:38~42의 본문에는 법의 기초, 탈리오의 법칙, 이 법칙의 구체적인 적용 등에 대한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즉, 물리적인 폭력, 소송, 정부의 요구, 적선의 요청 등에 관한 문제이다. 재세레파나 레오 톨스토이의 주장과는 달리 산상수훈이 법이나 제도를 불법화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루터의 견해와도 달리 법이 산상수훈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사람 또는 직업적 차이를 인정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본다, 산상수훈은 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법학

---

고의 소송제기와 피고의 자기 변호 모두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 할 것이다. --- 마음이 악의로 가득차고 질투로 타락하고 분노로 불타올라서 자비를 내버린 경우에는 아무리 정의로운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체의 소송절차는 불신앙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위의 책, 606.

25) 손규태, 203.

26) Bauman, 96.

27) Id., 119.

28) 고범서, 『라인홀드 니이버의 생애와 사상』 (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192.

29) Raymond B. Marcin, Tolstoy and the Christian Lawyer, 52 Cath. U. L. Rev. 327, 330 (2003).

30) Kissinger, 85, 87.

은 역설을 가져온다. 산상수훈은 지복(the Beatitudes)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추종자들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며, 탈리오의 법칙의 사례로 설명되는 것이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적용은 산상수훈의 보편적인 매력에 의해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추종자들의 그룹을 넘어서 확대된다.

## 1. 지복과 법의 완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상수훈은 지복이라고 알려진 일련의 축복과 함께 시작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검토하는 내용도 이러한 축복과 함께 시작하여야 한다. 지복은 공동체의 특징을 나타낸다. 원래의 모세의 법이 해방된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해석은 해방된 공동체에 대하여 주어졌다. 따라서 법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따라가는 것이다. 산상수훈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이 공동체의 조건은 그 수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역설적인 공동체이다.

헬라 문화에서 겸손이라는 말은 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축복하셨다. 그들은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으로부터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한다. 이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비를 얻고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 후에, 법의 성취와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임무가 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서과 선지서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sup>31)</sup> 그분의 왕국은 법에 의하여 특징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상은 신학적으로 많은 갈래를 가져왔다. 그리스도께서 법이 아니라 은혜로 안내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만약 산상수훈의 이러한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법을 다시 규정하고 법에 관한 그릇된 생각을 해결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법의 영적 성격을 지적했으며, 증오, 색욕, 이혼 및 맹세에 관한 각각의 실례는 이러한 점을 변증하고 있다. 그런데 성서는 변호사들에게 그들의 일상적인 소송실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답하고 있지 않다. 성서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윤리적·도덕적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성서적 지도원칙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

31)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 5:17.

다음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법의 의미가 사랑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원수 사랑과 자기희생을 통하여 확증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들을 구속함으로써 그 원수들을 사랑하셨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하늘 왕국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보복이라고 하는 지상의 행위양식이 아니라 악에 대하여 선을 행하는 천상의 행위양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새로운 공동체의 행위양식

### (1) 서

이러한 천상의 행위양식의 중요한 사례는 탈리오의 법칙에 대한 해석에서 드러난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레 24:19-20). 탈리오의 법칙은<sup>32)</sup> 시민법의 근거이며, 재판관이 지켜야 할 수범규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법칙은 범법자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위법행위에 대한 공적인 보복에 관한 규칙을 확립했다.<sup>33)</sup> 탈리오의 법칙으로 알려진 이 원칙은 보복의 법이요, 복수의 법이다. 이것은 냉혹하게 복수심에 불타는 보복의 악순환으로 인도한다. 이 원칙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람보식 변호사는 보복의 법에 따라 산다. 일방이 제재를 위해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도 다른 이유를 찾아서 제소한다. 일방이 기본적인 호의를 베풀기를 거부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한다. 일방이 부당하게 번거로운 증거제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상대방은 완전히 적법한 증거요구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한다. 법정에서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상대방을 파괴되어야 할 적으로 보는 전사의 자세를 취한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탈리오의 법칙은 사적인 복수에 대한 정당화로 해석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탈리오의 법칙의 오용에 반대하셨다.<sup>34)</sup> 그리하여 복수가 수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에 대하여 선을 행할 것을 원하신다고 가르치셨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

32) Black's Law Dictionary에서는 Lex Talioni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The law of retaliation; which requires the infliction upon a wrongdoer of the same injury which he has caused to another.” Black's Law Dictionary 822 (5th ed. 1979).

33) 그와 대조적으로 바벨론과 히타이트의 법은 부자나 가문이 좋은 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은 처벌(lesser penalties)을 허용했다. 전통적인 중국의 형법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처벌을 차별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Andrew R. Simmonds, Measure for Measure: Two Misunderstood Principles of Damages, Exodus 21:22-25, “Lif ef orLif e, Eye f orEye,” and Matthew:38-39, Turn the Other Cheek”, 17 St. Thomas L. Rev. 123, 125 (2004).

34) 이러한 오용행위는 다른 구약성서의 내용과 상치된다. 예컨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 19:18. 예수께서는 자기의 이웃을 자신의 민족으로 제한하는 자들에 대하여 반대의 가르침을 제시하셨다. 마 5:43-48.



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마 5:38-39) 고 가르치셨다. ‘대적하다’ 라는 단어는 법정용어로서, ‘법정으로 데리고 간다’ 또는 ‘불리한 증언을 하다’ 로 번역될 수도 있다.<sup>35)</sup> 예수께서는 보복금지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언급할 일상적인 네 가지의 예를 들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 5:39-42).

## (2) 내용

첫 번째의 예는 모욕과 관련된 것이다. 사람의 오른 편 뺨을 때리는 것은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며, 이는 모욕행위였다. 그러한 가격행위는 오늘날에도 모욕행위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에게 보복하는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편 뺨을 돌려대라고 명령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대신 기꺼이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뺨을 돌려대는 것은 악과의 비협조를 선언하는 것이며, 폭력의 논리를 직시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순간 무저항적 사람은 당당한 화해자(peacemaker)가 되고,<sup>36)</sup> 희생자는 은인(benefactor)이 된다. 따라서 정의는 사랑에서 비로소 그 완성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의 적극적인 형태가 아닌 한, 무저항주의 자체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편 뺨을 돌려대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정신으로 가득 찬 태도, 말, 행위 등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전략은 엄청난 자기훈련과 내적 권위를 필요로 한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보상의 원칙을 언급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해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있었던 손해를 복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원칙에는 차이가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피해자는 기꺼이 가해자에게 그것을 한 번 더 하게 한다. 손해는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향으로 두 번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보상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자발성에 의해서 뒤집어진다. 다른 편 뺨을 돌려대기는 정의에 대한 호소를 포함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는 법의 존엄, 즉 “정의, 정직, 그리고 진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서의 다른 본문에 관련 사례들이 있다. 예수께서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한 관리가 그 분의 얼굴을 때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35) Sinclair Ferguson, Kingdom Life in a Fallen World: Living Out the Sermon on the Mount 135 (Navpress 1987).

36) Vaught, 102.

그릇되었다면 그릇된 점을 증명하라. 그러나 만약 내가 진리를 말했다면 왜 나를 때리느냐?”(요 18:23). 바울도 자신을 때리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대답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회칠한 담이여! 네가 거기 앉아서 법에 따라 나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너 스스로 나를 치라고 명령함으로써 법을 위반하고 있다”(행 23:3). 바울도 역시 그가 매질을 당하게 되었을 당시에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물었다. “너희가 유죄로 확정되지도 않은 로마 시민을 매질하는 것이 정당한가?”(행 22:25). 단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와 진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리스도의 제자는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sup>37)</sup>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께서는 맞으신 후에 그 백성들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다른 편 뺀만이 아니라 자신의 온 몸을 주셨다.

두 번째 예는 역할의 반전(role reversal)에 관한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만약 누가 너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너의 속옷(tunic)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로 하여금 너의 겹옷(cloak)도 가지게 하라”(마 5:40).<sup>38)</sup> 채무자는 대출에 대한 담보물로 속옷을 제공했다. 극히 가난한 채무자들만이 담보물로서 겹옷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겹옷을 덮고 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차주들에게 명령하셨다. “네가 만약 이웃의 겹옷을 담보물로 잡는다면, 해가 질 때까지는 이를 돌려주어라. 그의 겹옷은 그가 자신의 몸을 덮을 유일한 덮개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밖에 덮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출 22:26-2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은 자신의 소유, 심지어 그들의 잠자리 의복까지도 기꺼이 포기하여야 한다고 말하셨다. 그러한 헌신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극히 가난한 채무자는 채권자이자 친구가 되는 것이다. 겹옷을 나누어줌으로써 상대방을 추상적인 정의 체제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대응 행위를 하게 할 수 있게 된다.<sup>39)</sup>

세 번째 정의의 예도 역시 역할 반전에 관한 것이다. 종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당시 우편 서비스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시민들에게 왕의 명령과 수하물을 운송할 것이 요구되었다.<sup>40)</sup> 이것은 특히 외국의 군대에 정복되고 점령된 지역에서는 보편적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추종자들에게 설령 적국 정부의 요구라 할지라도 요구받은 것의 두 배를 하라고 명령하셨다. 처음의 오리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하는 중

37) 손규태, 205.

38) 성서는 모든 소송을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personal vengeance)를 금지하고 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고전 6:7-8.

39)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는 왜 의복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들 중의 하나만 못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불속에 던져질 들꽃을 입히시는 방법이라면, 그분이 너에게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오 믿음이 작은 자여?” 마 6:28-30.

40) 구레노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운반하도록 요구를 받았던 것도 동일한 배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마 27:32.

과 같은 처지에서 이루어지는 비자발적인 복종이지만, 두 번째의 오리에서는 주인의 자격과 같이 당당한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베푸는 행위가 된다.<sup>41)</sup> 두 번째 오리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자(benefactor)요, 친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부의 권위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정부의 권위에 순복하여야 한다(롬 13:1). 그러나 식민지의 백성이 징발 당했을 때, 그리고 로마의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오리를 걸을 때, 오리를 넘어서 더 짐을 운송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어떤 군인도 요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 이러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로마의 황제와는 다른 또 하나의 황제를 가지고 있으며, 로마의 법보다 더 무한하게 강력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다른 또 하나의 황제에게 속해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sup>42)</sup>

네 번째의 예는 돈을 빌리고자 하는 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불합리한 추론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가난한 자들과 관련한 오래된 성서법의 내용이다. 신명기 15:7-11은 말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탈리오의 법칙은 원수를 사랑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을 요구한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관대하게 주라고 명하신다. 비록 모욕을 당하고 속옷과 겹옷을 빼앗기고 오리를 더 걷게 되더라도, 그들은 똑바로 서 있으며 심지어 줄 수도 있다.<sup>43)</sup> 그들은 되돌려 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준다. 사랑은 언제나 증가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으며,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악한 행위를 규율하는 법도 역시 은혜의 생활양식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3. 원수 사랑

탈리오의 법칙에 대한 내용의 바로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권고가 위치한다

41) Vaught, 103.

42) Ferguson, 138.

43) Vaught, 105.

(마 5:43-48).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어서 논리적인 출발점이다.<sup>44)</sup> 이것이 다른 이니시어티브의 원천이 되는 중심적인 이니시어티브이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그들에게 대항하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빌어주라 라고 하는 변호사에 대한 단순한 요청은 소송상의 모든 대결구도를 크게 변화시킨다. 변호사의 적은 그를 모욕하거나 억압하는 자, 그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하는 자, 그를 제소하는 자 동일 것이다. 각각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변호사의 대응은 아가페 사랑이어야 한다. 그의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빌어주는 사랑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랑이며,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설령 그 사람에게 자격이 없다고 해도 그를 위한 최선을 바라는 판단이다. 가슴의 느낌이 아니라 마음의 결정이다.

물론 사랑은 타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징계 및 훈련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징계와 훈련은 복수를 겨냥해서는 안 되며,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 5:43-45). 궁극적으로 바로 여기에 앞의 네 가지의 예를 든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시고,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내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 모든 사람이 친절을 베푸는 자에 대하여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까지 친절을 베푸신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행위는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타인의 친절한 행위 또는 악한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원수사랑, 악과의 비협조 및 정의의 촉진 등을 결합한다.

#### IV. 고용된 총잡이를 넘어서

이상에서 검토한 산상수훈의 내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교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산상수훈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함께 시작한다. 우리가 구속받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우리는 법을 영적인

44) Perrin, 530.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의 목적은 사랑이다.<sup>45)</sup> 그리스도의 제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에도 관심을 둔다. 이때 마음의 기준(test of the heart)은 특정 행위가 타인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부의 문제이다. 법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이해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복수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의는 반대로 개인적인 고통과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시켰다.

그렇다면 법률가는 그저 고용된 총잡이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고용된 총잡이라는 말은 변호사에 대한 가장 높은 찬사이며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다. 우리 사회는 의사에게 육신의 병을 치유하여 건강을 지킬 임무를 부여하고 있고, 법률가에게는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고용된 총잡이 개념에는 치유자로서의 법률가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려되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그리스도인 법률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의 법률실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에게는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과 더 높은 기대가 존재한다고 하는 실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과 기대는 그리스도인 법률가가 정의라고 하는 기계장치를 다루는 기술자 이상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단지 가치중립적인 기사이거나 로봇과 같은 도덕과 무관한 기술자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상적인 법률실무에 통합하여야 한다. 법률가는 람보가 사용하는 전술에 대해 면책을 받기 위해 변호사로서의 역할 뒤에 숨지 말고, 그의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정당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보통 법률가들은 역할 구별(role differentiation)이라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변호사의 역할 뒤에 숨어버린다. 그들은 변호사 역할을 하지 않을 때와는 달리 법률가 역할에서 행위를 할 때는 다르게 행위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도 덜 느낀다. 그렇다면 변호사 업무는 정의실현이나 진실발견과는 거리가 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에 관한 정의와 공정성의 원칙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윤리는 사람을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

---

45) Mark B. Greenlee, Echoes of the Love Command in the Halls of Justice, 12 J.L. & Religion 255, 257(1995-1996).

는 것을 거부하시고, 사람 자체를 귀중하게 보셨다. 이러한 태도는 법률가들의 수단에  
 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가르침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수단에 관  
 한 것이 목적에 관한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21~48). 그분은 추  
 종자들에게 복수심에 불타는 보복행위를 피할 것을 요구하셨고, 평화를 재건하고  
 치유와 화해를 가져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특별한 소송절차를 제시하셨다  
 (38~48). 그분은 성과나 목적 대신에 사람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을 최고로  
 보는 돌봄의 윤리(ethic of care)를 주창하셨다. 오늘날 소송절차에는 정중하고 예  
 의바른 모습이 실종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무례한 모습은 의뢰인의 승리라고 하는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하는 람보식의 실용주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적·사법적 노력은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한 오로지 한 가지의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법률  
 가들의 마음의 변화일 것이다. 즉 그들이 그들의 업무와 상대방을 보는 방법의 변  
 화이다.

뽕 잡는 것이 매라는 식의 실용주의는 문제를 더 악화시켜왔다. 예수께서는 프로  
 그램, 전술, 법적 권리, 개인적인 성공 등보다도 언제나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삶을  
 주창하셨다. 그분이 주창하신 변혁원리인 원수사랑은 자기 자신의 이익 앞에 타인  
 과 그 타인의 필요를 놓도록 하신다. 존중과 호의의 기본원칙 및 공명정대한 행동  
 은 뜨겁게 다투어지는 소송의 한 가운데에 적용된다. 법률가들은 의뢰인의 중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  
 다. 예수께서는 ‘의뢰인 우선주의’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정의 우선주의’ 모델을 요  
 구하신다. 법률가는 법정에서 공인으로서 행위하고 그의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는  
 과정에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의  
 우선주의 모델에서는 법률가들은 단지 의뢰인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데 머물러서  
 는 안 된다. 이러한 법률가들은 자신의 역할이 의뢰인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고  
 용된 총잡이가 아니라 치유자이자 화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sup>46)</sup> 따라서 법  
 른가는 가능한 선택을 검토하기 위해 의뢰인과 대화해야 하고, 각각의 선택의 적법  
 성만이 아니라 그 도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sup>47)</sup>

나아가서 변호사는 고용된 비둘기로서 의뢰인과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소송과정에서 자신이 단지 의뢰인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  
 다. 소송이 복수의 도구로 이용되는 되는 것을 피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한 근본적  
 인 동기에 관해 의뢰인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법률가들에게는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의뢰인의 동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자신  
 의 역할이 도덕적 대리인이라고 이해하는 법률가에게는 동기가 중요하지 않을 수

46) Scott, 351.

47) Allegretti(1999), 73 이하.

없다. 예수께서는 마음을 머리 또는 손과 분리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거부하셨다(마 5:21~22). 즉, 이유가 목적이나 방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좋은 목적과 좋은 수단만이 아니라, 좋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가들은 자신의 동기 및 의뢰인의 동기가 정의의 목적에 봉사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복과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검토해야 한다. 법률가들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의뢰인과 그 동기에 관해 대화를 해야 하며, 복수나 보복을 위해서는 소송은 빈약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은 진정한 만족이나 계속적인 구제 또는 사건종결의 감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법률가는 의뢰인을 위한 복수의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그 대신에 법률가들은 자신의 금전적 관계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분쟁해결책을 찾아야 한다.<sup>48)</sup> 소송을 자제하도록 설득하여야 하고, 명목상의 승리가 종종 실질적인 패자가 되고 마는 이치를 지적해주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제정한 법령이 있다면, 고용된 비둘기는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더 같이 가라’고 하는 유추에 따라, 그의 의뢰인이 전심으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개정을 위한 운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존재하는 한 법률가들은 그들의 고객에 대하여 그 법의 정신을 기꺼이 준수하도록 조언하여야 한다.<sup>49)</sup> 법률가는 화해자로서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법률가들은 법이 부여한 단순한 윤리적·절차적 요건을 넘어서야 하며, 의뢰인의 주장의 법적 사실적 충분성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원수의 최선을 빌라’고 하는 원수사랑이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반(反)문화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50)</sup>

뿐만 아니라 겸허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지혜를 의지하여야 한다.<sup>51)</sup> 법률가들은 권력, 명성, 특권, 부 등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하여 교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sup>52)</sup> 아마 보통의 변호사보다는 람보식의 변호사가 이 병에 걸리기 쉬울 것이다. 교만을 근원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자비로운 자로 묘사하셨다(5:3,4,7). 이러한 성품은 신에 대한 의존의 인식, 세상 죄에 대한 슬픔, 신의 자비에 대한 감사 등 겸손한 태도의 기초임을 암시한다. 그리스도인 법률가는 자신이 신이 아니며, 전능

48) Model Rules of Prof 'lConduct R. 1.3 cmt. 1 (2002).

49) 그러나 법이 직접적으로 성서의 원리에 상치되는 경우라면 그 법을 준수해서는 안 된다. 행 4:19.

50) Perrin, 541.

51) Kenneth W. Starr, Christian Life in the Law, in Can a Good Christian Be a Good Lawyer? 48 (Thomas E. Baker & Timothy W. Floyd eds., 1998).

52) Id.

자도 아니며, 창조주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원수 사랑의 실행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오류가능성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정직과 진정성이야말로 치유와 화해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 V. 맺음말

전통적으로 법원에 가지 않는 것이 명예롭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생각의 저변에 있어왔다. 바울은 세속법정에 가는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나아가서 기독교인이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세속법정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이는 당시의 문제를 넘어서 분쟁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의미 있는 가르침이 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복음의 핵심인 화해와 권리의 포기라고 하는 개념에 합치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부당하게 고소 당하셨지만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칼빈은 모든 세속법정에서의 소송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교회에 만연한 탐욕과 적개심을 금한 것이며,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를 금한 것이라고 보았다.<sup>53)</sup> 즉 소송은 허용되지만, 올바르게 사용될 때만 그렇다고 하는 것이다. 정의를 추구하되 적개심이나 복수의 감정을 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기독교적인 사랑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송은 선량한 사람을 나쁘게 행동하도록 유혹한다. 법률가들은 그러한 행동을 부추기고 기쁨을 끼얹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사법제도는 법제화된 폭력의 한 가지 형태이다. 그 뒤에는 조직화된 폭력의 사회적 강제로 인하여 상처를 입는 희생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소송구조에서 변호사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우리 사회가 보는 변호사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속적인 분쟁해결의 원리가 가지고 있는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히 성서의 가르침을 중시하는 변호사는 어떠한 태도로 그의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인가? 특히 산상수훈에 나타난 분쟁해결의 기준을 중심으로 이를 우리 현실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연 산상수훈은 현실세계에서의 실현가능성을 도외시하는 그저 하나의 고상한 내용의 종교적 가르침에 불과한 것인가? 그러나 산상수훈은 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적 기준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의미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산상수훈은 법의 의미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라고 하고, 소송을 피하는 방식으로 살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변호사에 대해 조언하기를, 의뢰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 당하지 않게 될 방식으로 행위하도록 조언하게 하

---

53) Calvin, 606-7.



고, 만약 원수가 언쟁을 시작하면 용서하게 하지만, 개인적인 복수를 초월하여 원칙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적 권리를 기꺼이 주장하게 하고, 법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한다. 우리 법조문화가 일반 시민의 정서를 더욱 황폐화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에서 설파되는 있는 법조윤리의 원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 법률가들의 경우 단순히 고용된 총잡이에 머물지 말고 고용된 비둘기의 의미를 간직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법률가는 정의의 수호자요, 진실을 찾는 자이며, 매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시하는 법률가는 법을 준수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에 대하여 아가페적 사랑을 보여주고 화해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희망과 치유를 가져오는 변혁 이니시어티브들을 통해서 서로를 과멸로 이끌게 되는 끝없는 불법행위와 보복의 사슬을 깨뜨릴 것을 가르치신다. 고용된 총잡이나 람보식의 법률가의 개념은 화해자로서의 법률가의 개념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진정한 변화에 대한 희망이 존재한다.

세속 법정에서는 성서가 제시하는 분쟁해결에 관한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기독교적 진리에 입각하여 다툼을 해결할 일종의 중재기구를 만들고 이를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54)</sup> 이는 법정이 아니라 알선, 중재, 협상 등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며, 소송보다 더 바람직한 면이 많다고 할 것이다. 성서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비사법적 구제책으로 기독교조정센터나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KCCD)<sup>55)</sup> 등과 같은 기관도 이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기관은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분쟁당사자들의 화해까지를 그 목표로 한다. 결국 기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분쟁해결문화의 정착을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

54) 한 철, “교회관련분쟁의 법률문제”, 『기독교문화연구』 제13집 (한남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소, 2008), 132.

55) www.peacecenter.kr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가재환 (2001), “법조윤리교육의 필요성과 현황-사법연수원의 법조윤리교육 (1981~2000)”, 『법철학연구』 제4권 제2호.
- 고범서 (2007),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 대화문화아카데미.
- 김대인 (2009), “마르틴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고찰-두 왕국론을 중심으로”, 『기독교대학교육 및 기독교학문의 토대』, 제4회 국제기독교대학교육학술대회 프로시딩.
- 손규태 (2004),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대한기독교서회.
- 심헌섭 (2003), “법조윤리의 정신과 이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 최대권 (2003), “새 시대의 법조윤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 한인섭 (2003),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 한 철 (2008), “교회관련분쟁의 법률문제”, 『기독교문화연구』 제13집, 한남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소.

### [외국문헌]

- Allegretti, Joseph(1991), Have Brief case Will Travel: An Essay on the Lawyer as Hired Gun, 24 Creighton L. Rev. 747.
- \_\_\_\_\_ (1999), The Lawyer's Calling-Christian Faith and Legal Practice, 심동섭·전재중 역, 『법조인의 소명』, IVP.
- Bauman, Clarence(1985), The Sermon on the Mount: The Modern Quest for Its Meaning 3, Mercer Univ. Press.
- Blomquist, Robert F.(2003), Law and Spirituality: Some First Thoughts on an Emerging Relation, 71 UMKC L. Rev. 583.
- Calvin, John(2003),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옮김, 『기독교 강요(하)』,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Cook, Anthony(1994), The Death of God in American Pragmatism and Realism: Resurrecting the Value of Love in Contemporary Jurisprudence, 82 Geo. L.J. 1431.
- Ferguson, Sinclair(1987), Kingdom Life in a Fallen World: Living Out the Sermon on the Mount 135, Navpress.

- Greenlee(1995-1996), Mark B., Echoes of the Love Command in the Halls of Justice, 12 J.L. & Religion 255.
- Harris, Allen K.(2001), The Professionalism Crisis - the “Z” Words and Other Rambo Tactics: The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Solution, 53 S.C. L. Rev. 549
- Kissinger, Warren S.(1975), The Sermon on the Mount: A History of Interpretation and Bibliography, Scarecrow Press.
- Krauss, Michael I.(2001), The Lawyer as Limo: A Brief History of the Hired Gun, 8 U. Chi. L. Sch. Roundtable 325,
- Marcin, Raymond B.(2003), Tolstoy and the Christian Lawyer, 52 Cath. U. L. Rev. 327.
- Perrin, L. Timothy(2005), Lawyer as Peacemaker: A Christian Response to Rambo Litigation, 4. 32 Pepp. L. Rev. 519.
- Schneyer, Ted(1991), Some Sympathy for the Hired Gun, 41 J. Legal Educ. 11.
- Scott, Charity(2008), Pathways to Collaboration Doctors as Advocates, Lawyers as Healers, 29 Hamline J. Pub. L. & Pol'y 331.
- Simmonds, Andrew R.(2004), Measure for Measure: Two Misunderstood Principles of Damages, Exodus 21:22-25, “Life for Life, Eye for Eye,” and Matthew:38-39, Turn the Other Cheek”, 17 St. Thomas L. Rev. 123.
- Szto, Mary C. (2000-2001), Lawyers as Hired Doves: Lessons from the Sermon on the Mount, 31 Cumb. L. Rev. 27.
- Vaught, Carl G.(1986), The Sermon on the Mount: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State Univ. of New York Press.